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1. 개요

□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도모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①채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 ①(채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채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채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②(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 ③(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 용자조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1억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 합산

<대출한도 운영방법>

-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운전자금 잔액한도 5억원,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와 별도로 운용
 - * 대리대출 잔액 포함
- 10만원 단위로, 최소 1백만원 이상 대출신청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례(특별)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조건을 적용

- ① 사회재난('22.10.29.)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서울시 용산구
- ② 태풍 힌남노('22.9.5~6)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③ 집중호우('22.8.8~17)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 고천동·의왕시 청계동·용인시 동천동,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보령시 청라면
- ④ 강릉산불('23.4.11)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강원도 강릉시에 한하여 대출한도 3억원 이내
- 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연 1.5%(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용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약정방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 신청기간

- '25년 1월 6일(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신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 유발 행위	①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 목적 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자격사칭에 해당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 대출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登記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이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출제한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예외사항>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table> <tr> <th>구 분</th><th>내 용</th></tr> <tr> <td>신용도판단정보</td><td>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td></tr> <tr> <td>공공정보</td><td>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td></tr> </table>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예외사항> ·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대출신청 가능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사업장 기준>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자가주택 기준>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구 분	내 용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7.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8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8.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0.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

□ 대출신청 자료

① 공통자료

구분	서류명	비고
① 대출신청 작성서류	- [필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자가진단<서식1>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서식2>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서식3> - [생략]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식4>	각1부
	<개인기업, 법인> - [필수]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서식5>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서식6>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서식7>	
②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택1부

구분	서류명	비고
③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위 서류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음	1부
④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 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부 (1개월 이내)
⑤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 (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⑥ 주소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표시: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⑦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비고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거주주택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해당 시 1부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서식8> 제출 * 예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공동)대표이사>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서식9> 제출 * 예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거주 하는 경우 등	
⑧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보충서류> -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택1 (1개월 이내)
⑨ 재해 확인	<개인기업, 법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확인증상 유효기간 이내)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을 수집할 수 있음

② 추가 자료

구분	서류명	비고
법인기업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 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❺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❶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❹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업종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구분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